

+ 입법정보

서(서)증의회소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2019
통권 제21호

SEJONG CITY COUNCIL



의정 포커스

제55회 · 제54회
임시회

인터뷰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희 · 박용희 의원

의정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동건의서 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55회 임시회 개회사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칩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주요 시책이
올 한해 적시 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 견제와 감시,
입법 활동에 매진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3 · 1일절을 맞아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3 · 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슬로건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무단통치에도 자유독립의지를
평화적으로 만방에 선포하며
민족정신을 지켜냈습니다.
동경 2·8독립선언서 낭독과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치욕의 역사에서 빛어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이처럼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피땀으로 일군
항거와 투쟁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세종시의 일원이 되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조기 정착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완전 이전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시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올 한해 세운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도전해간다면
우리가 그런 이상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근태*

10:00

2019.03.22(일) 10:01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작 18	총석 18
5분 자유발언(체평식, 김원식, 이윤희, 차성호, 이영세 의원)			
1. 긴급현안질문			
<의회운영위원회>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1호



- 4 **의정 포커스**
 제55회·제54회 임시회
- 6 **인터뷰**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 / 이윤희 의원 / 박용희 의원
- 12 **의정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동 건의서 외
- 19 **의장기고**
 3·1 만세운동과 시민주권
- 20 **5분 자유발언**
- 35 **시정질문**
- 42 **긴급현안질문**
- 45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 50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인포그래픽**
- 54 **포토 에세이**
- 55 **입법정보**
- 85 **독자투고 ①**
- 86 **세종시티투어**
- 8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90 **독자투고 ②**



세종시의회 제55회 임시회 마쳐… 32개 주요 안건 처리

윤형권 의원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7억원 증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22일 오전 10시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 총 3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영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고, 박용희·유철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 제3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37일간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54회 임시회 27개 주요 안건 처리

'가계 경제 고통 분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의정비 삭감

세종시의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인수·상병현·이태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책을 요구했으며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사태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특히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비 관련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의정비 51,972천원을 받게 된다.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전라남도와 함께 최저 수준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관즉득중(寬則得衆)이란 성어처럼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올해 첫 회기가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의 내실과 균형 위해 뛴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의 가장 큰 자산은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이다. 이 의원은 오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장을 역임하며 시 집행부와의 공조와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의회 운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과거 소정·전의면장에서 현재 해당 지역구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재현 의원(전의·전동·소정)을 만났다.

Q 지난 임시회를 거친 소회와 함께 회기 동안 주요 관심 사안들을 꼽아본다면.

지난해 7월 2일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저를 믿고 성원해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의정활동을 지지해준 주민들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2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거치며 많은 안건을 다루며 심사하였는데, 그 중 무상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기틀을 다졌고,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했던 사례는 우리 의회가 성숙되고, 한층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Q 지난 회기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고, 반면 아쉬웠던 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매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간담회를 추진해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가축 분뇨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한 결과, 관련 용역의 추진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되돌아보면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 여론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의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은 의회 민주주의를 성숙케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한 고언(苦言)들을 통해 시민들께서 바라는 세종시의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선진 광역의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Q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세종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본다면.

우리 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지방분권 추진의 중심에 있는 도시다. 그에 반해 행정중심도시로 특화된 반면, 자족도시의 관점으로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과 해외 유수 대학 유치 등을 통하여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 또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에 위치한 7개의 산업단지 내에 95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자치 분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협의회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준비 중으로 5월 예정인 제56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을 발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Q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루기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점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이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수도 명문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의회에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6·13 선거 운동 당시 후보자로서 가졌던 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뿌리내리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들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



건강한 보건환경은 행복도시의 절대 조건

세종시의회 이 윤 희 의원

제3대 세종시의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대전보건대학 겸임교수 출신의 보건학박사 이윤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보건학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초선 의원으로서 세종시의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을 만나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활동 각오 등을 들어봤다.

Q 지난 임시회를 거친 소회와 함께 회기 동안 주요 관심 사안들을 꼽아본다면.

처음으로 추진했던 것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웰 다잉’ 문화의 확산이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을 낮추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웰 다잉 문화 조성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또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치료비가 200만원 이상 든다. 그래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제안한 결과, 올해 예산에 해당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으로부터 안전한 시의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저 측정기 강제 설치 등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양치교실에도 관심이 깊다. 올해 5개 초등학교에서 양치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치 교육과 불소 도포 등 치아 관리도 받을 수 있다. 향후 신설 학교에 양치 교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이번 제56회 정례회 때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Q 지난 회기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고, 반면 아쉬웠던 점은?

제 공약 사항이자 주민들의 관심 사안인 소담동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된 성과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등 집행부로부터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일부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시정 브리핑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소담동 환승주차장 부지를 로컬푸드 매장과 겹해서 사용하겠다는 확답을 일부 받은 상황이다.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일을 하다 보면 국장과 과장 등 고위직들이 자주 바뀌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 인수인계 후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관심 분야나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시장님께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Q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세종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본다면.

출범 7년 만에 30만 인구로 성장했다. 세종시의 강점은 지금도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점이다. 얼마 전 한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50~80만 대도시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시민 행복도를 유지해나가면서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나 가야 한다. 지금부터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를 잘 다져나간다면 세종시의 강점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세종시의 공공의료는 약점에 속한다. 충남대 병원이 개원한다 해도 수련의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경우 파견 의사가 와야 되는데,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종시가 그런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Q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 또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얼마 전 대전은 흥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 환경은 민간 의료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공공 의료 차원에서 채워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 시는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립의원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 구강 관리는 한 번 잘 배워놓으면 치아 건강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양치교실도 생각해보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Q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루기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점은?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부터 행정수도를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터라 더욱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시민, 시 집행부 등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된 만큼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그 밖에 여성가족부 등 미아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 때 행정수도 명문화가 공약에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 여건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Q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제 관심 분야는 건강한 보건환경이다. 우선 향후 반곡동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긴다. 그 안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매뉴얼들을 담고 있다. 저는 그 매뉴얼이 잘 완비되어서 문제없이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부족한 민간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완해야 한다. 향후 읍·면 지역의 의료 수요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립 의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나갈 것이다. 응급 의료의 경우 건양대병원, 선병원, 베스티안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있어도 시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4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



세종시가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세종시의회 박 용 희 의원

영국 정치학자 앤 필립스는 〈참여의 정치〉에서 ‘사회구성원의 고른 참여 없이는 정책 쓸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술했다.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한 정치 참여는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지역 정계에도 점차 여성들의 유리 천장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리더십이 국내 정치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3대 의회에 입성한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다. 최근 박 의원은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마련에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종시가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육성해서 세종형 문화예술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Q 지난 임시회를 거친 소회와 함께 회기 동안 주요 관심 사안들을 꼽아본다면.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 분야 중 지역 관심사로는 조치원 지역의 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조치원중학교 이전과 조치원여중의 신축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치원읍에는 두 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가 지역의 중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한다.

Q 지난 회기 동안 의정활동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반면 아쉬웠던 점은?

초선의원이기에 과정 과정마다 도전의 연속이다. 늘 불안감이 크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5분 발언과 시정 질의, 긴급현안질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끊임없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홀로 야당 의원이다. 의정 경험을 하나둘씩 쌓아나가면서 극복을 하고 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Q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세종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본다면.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수도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이주되었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잣은 서울 출장으로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부처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의 강점에 약점을 보완해야만 명품도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Q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 또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5월 정례회 때 2개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두 건의 조례안이다. 세종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문화예술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문화예술이 적절히 결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종시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육성해서 세종형 문화예술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Q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루기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점은?

행정수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행정 수도 명문화는 우리 세종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기원하는 숙원 사업이지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중앙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Q 앞으로 시민 메시지와 함께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홀로 야당 소속 의원이지만 정파를 떠나 민의의 전당인 세종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세종시가 명품 도시가 되고, 명품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
의정뉴스
NEWS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건의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 필요”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월 28일 11시 30분 대전시의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 건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참석했다.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국정 운영의 분절 현상을 막고 업무 효율성 강화는 물론, 업무보고 등 출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충청권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사 직후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상생 발전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보류한 만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의 요구와 바람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충청권 상생 위해 손 맞잡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공동 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 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단과 손을 맞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에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등 충청권 의회 의장단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향후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 공항임에도 그간 중앙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만을 집중 육성해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급증하는 충청권의 항공 수요와 교통 편익을 외면해 충청권 550만 주민들과

각급기관·단체·기업들은 인근의 청주국제공항을 두고 면 거리에 있는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의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촉구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여객과 화물 수송 확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와 중부권 주민들의 항공이용 편의를 위해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이 시급하다”며 “충청권 상생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제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채택한 공동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15일 (사)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서 특별 강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3월 15일 (사)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개강을 맞아 '세종시 출범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서 의장은 조치원의 역사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과정과 성장을 거듭해온 시의 발전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 의장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조치원 시장은 2020년에 개설 25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지금부터 250주년 행사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원 과거 사진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약 한 시간가량의 강연을 마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여기 모인 어르신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

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 첫발 내딛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 지원단체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2월 22일 10시 30분 의정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과 세종시교육청 김동호 장학관을 비롯해 교육분야 민간 전문가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주환(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구(고운청

소년문화의집 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세종시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모임 활동 계획·일정 등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2월 22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연구모임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도 추진할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 등 활동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재현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채평석 의원,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세종시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농·축산업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결성되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성수 의원)'은 2월 26일 오후 2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형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박성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이영세·손인수 의원과 이일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이랑(전의산단어린이집 원장), 허혜진(세종시 육아종

합지원센터장), 이순희(市 여성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담당)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세종시의원 최초로 2014~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쾌거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윤형권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과 2015년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을 거머쥐며 세종시의원 최초로 세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치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제15회 우수조례평가 장려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세종시의회 최초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월 1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김 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도전' 아름2중 건립 교육부 중투심사 재검토 요청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교육부의 2019 정기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에 아름중학교 증축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아름2중은 분교 신설이 아닌 아름중학교 증축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아름2중 건립은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14일과 2019년 3월 5일 시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조속한 학교 설립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 도전으로 뜻깊은

결실을 맺을지 주목됐다. 한편, 최근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 부적정 통보됨에 따라 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세종 학교 운동부 대체 야구·축구팀 생긴다!

윤형권·임채성 의원은 3월 20일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담당 김승기 장학사와 세종시체육회 황성연 팀장 등 6명이 모여 스포츠클럽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전문지도자 인건비 및 법인 운영비를 제공하는 정부의 스포츠정책 사업이다.

세종시체육회는 오는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스포츠

클럽으로 선정되면 비영리법인(가칭 세종스포츠클럽)을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스포츠클럽을 설립해 세종시체육회 회원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문체부로부터 3년 간 국비 9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학교 운동부 창단이 안돼서 지역의 유망한 운동선수들이 대전과 청주 등 외지로 떠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운동지도자들은 스포츠클럽 창단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종시의회 설 연휴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송정노인복지센터와 세종빌, 평안의 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이날 방문 일정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해 안찬영·이영세 부의장과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박성수·유철규·박용희·손인수 의원 등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동행했다.

서금택 의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2019년 시무식 개최… 새해 각오 다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월 2일 오전 10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열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해년 새해에는 의회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자”며 “행정수도 완성을 물론, 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주독립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1만세운동에서 찾은 시민주권의 힘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일으켜 체포된 후 일제의 극악무도한 고문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정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추가 서훈은 유관순 열사의 의로운 투쟁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 거사를 통해 찬란한 시민주권의 힘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3·1 만세운동은 평범한 민중들의 항거였다.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 국권 침탈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한 결과다.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선 민중 혁명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광복 이후에도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민중 주도의 독립운동에서 새롭게 배울 점들이 있다. 여론을 바르게 읽어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된다는 점이다. '시민 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표출되는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자치법규를 만들어내고 관련 정책

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등 여론 전달자이자 이해관계 조율자, 시민복리 증진의 기수(旗手)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부터 위로 향하는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시정과 의정 방향의 절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범 함을 위대함으로 만드는 시민주권의 힘이 앞으로 세종시에서 꽂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朴允泰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동 지역까지 확대 제안

임채성 의원

“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를
통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2016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1월 23일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본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를 통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2016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의 단가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학교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교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레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동 지역 중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시행 4차년에 접어든 만큼 사업에 대해 평가해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본래 목적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무상교복&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상병현 의원

무상교복은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산물

상병현 의원은 11월 23일 제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6일 교육안전위에서 통과된 무상 교복 조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복,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 교복생산업체 선정 시 실수요자인 학생 참여 ▲ 학생, 학부모, 교사, 섬유·의류전문가로 구성된 교복품질 검수단 구성 ▲ 무상교복 제공 후 2~3개월 내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평가 실시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기차게 살아난 효과로

나라경제도 활력 되찾는 구조 만들어야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1월 16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 사항은 ▲ 사업 발주 주체와 지역 업체의 소통 강화 ▲ 세종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을 반드시 지역 업체와 계약 ▲ 지역 신생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 주소지만 이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이 화두가 된 지금 이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그 효과로 나라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내 우선 계약으로 지역업체와 나아가 지역경제 살려야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1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 의원은 2016년 시행된 세종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가 여러 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어 지역 업체 살리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예방접종,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개선안에 대해

이윤희 의원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2019년
17개 시·도 중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충북 다음으로 높게 관측됐다

”

세종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12월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병과 사고 등에 사전 예방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세종시의 의료격차와 미충족 의료율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보건환경을 조성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3월 22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설치’를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2019년 17개 시·도 중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충북 다음으로 높게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세종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측정기 설치와 관련 법령 제정 노력 ▲ 공사현장 분진흡입차·살수차 주기적 투입 ▲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대중 교통비 할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 공항행 버스 노선 개설 촉구

김원식 의원

“

조치원을 세종시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거점으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인천공항
버스 경유와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직행 노선 개설

”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100% 이행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죽림·번암)은 12월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 실효가 1년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의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집행 되었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20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100% 집행 완료하고 둘째, 공원부지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협약 방안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같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북부지역 공항행 버스 노선 개설”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3월 22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거점 마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 2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2030 아시안 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발표함에 따라 김 의원은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 중 하나인 ‘공항과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치원을 세종시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거점으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인천공항 버스 경유와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직행 노선 개설”을 요구했다.





보람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유철규 의원

“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근 공원 쪽으로
진·출입로를 변경하거나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출구를
변경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12월 14일 열린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생활권 복지지원센터 공사에 따른 통학권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철규 의원은 “3생활권 복지지원센터 조성 공사로 인해 통학 안전 등을 위협받고 있는 보람 유치원생과 초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세종시와 행복청, 경찰서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사로 인해 인접한 보람 유치원생과 초등·중학교 학생들이 통학 안전 위협과 함께 소음·분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 전제하고 “특히 복지 지원센터 외에도 종교시설과 선관위 건물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꾸준히 통학로 근처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근 공원 쪽으로 진·출입로를 변경하거나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출구를 변경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과 시 관계부서의 참여를 통해 인근 도로의 신호체계 변경과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품질 검수위원회 운영으로 명품 교육환경 조성 나서자

박성수 의원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1월 16일 열린 제5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품질 검수위원회’ 도입을 제언했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신설학교 건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균열,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주민참여 시설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사 시행 적정성 등 감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시설물 품질검수에 필수적인 ‘사전체크리스트’와 준공 후 발생 문제점을 지속 관리할 전담지원 인력 등도 부재한 실정으로, ‘학교품질 검수위원회’를 도입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학교품질 검수위원회는 신축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 제거와 친환경자재 시공 등에 대한 관련규정 마련·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시설물 하자 발생의 원천 차단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보수를 진행하는 등 학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보완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조치원여중 신축 제안

박용희 의원

“
 조치원여중을
 학교 북쪽에 신축해서
 교동초등학교와의 거리를 넓혀
 학생들의 일조권을 보장하고,
 주변지역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당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1월 16일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확정 발표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중학교가 이전 신축되면서 조치원 지역의 중학교 현안사항인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 해소가 예상되지만, 조치원여자중학교의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치원여중 시설개선사업에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지만 1973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그치는 계획으로, 인접한 조치원 교동초등학교의 소음 문제나 학생들의 일조권 보장에 관한 대책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조치원여중을 학교 북쪽에 신축해서 교동초등학교와의 거리를 넓혀 학생들의 일조권을 보장하고, 둘째 조치원여중 주변지역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치원지역 발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세종시청이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로등 설치 의무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차성호 의원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적극 도입
및 교통안전교육 장소를
시 관내에 마련하여 줄 것

”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가로등 설치 의무화 방안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월 17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도시 지역 주거단지의 가로등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행복도시 1·2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전원주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크고, 2030년까지 3~6생활권이 지속 개발 중에 있어 비도시 지역 전원주택 단지 가로등 부족 문제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단지 개발허가 시 가로등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3월 22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2013년 6만 6천 건에서 2017년 11만 5천 건으로 73% 급증했고,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 6천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고령운전자 사고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 적극 도입 및 교통안전교육 장소를 시 관내에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5분
자유발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해야

손 인수 의원

“
대형저상버스의 투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교통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읍·면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해 달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은 1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노선확대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세종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낮은 복지 수준을 지적하면서 선진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은 8개 특별·광역시 중 세종시 교통약자의 비율은 가장 높은 데 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른 것을 안타까워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저상버스의 투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교통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읍·면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해 달라”며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유지 활용을 통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해

이태환 의원

“
조치원지역
국유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시설을
조성해 줄 것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신흥·신안·봉산·서창)은 1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지역 국유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대 의원 당시 지적했던 국유지 활용 요구에 대한 시청의 행정과 대응책이 미흡했다며 공시지가 상승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의 이유로 국유지 매입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에 나누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매입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언급했으며, 급상승하는 세종시의 공시지가를 감안해 조속한 국유지 매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유지 활용 방안으로 대부 형태를 이용해 조치원 지역 내 체육·여가시설 확충에 관한 대안도 제시했다.

평소 이 의원은 조치원 지역 내 부족한 복지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조치원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생 등·하교 통학여건 개선” 거듭 촉구

상병현 의원

“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내세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통학차량 지원 모두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3월 4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상병현 의원은 지난해 열렸던 제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53회 정례회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불문하고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내세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통학차량 지원 모두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상 의원은 “결국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던 교육청의 언론 홍보와 약속은 빈말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 의원은 원거리 통학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상 의원은 ▲ 학생 원거리 통학 여건을 반영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 동 지역 통학버스 지원 기준 현실화 ▲ 교육청 통학차량 운영 적극 추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 더 이상 이 주제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며 통학 문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수립해야

노종용 의원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세종시 맞춤형 푸드플랜이 수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3월 4일 오전 10시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출범 이후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로컬푸드의 운영 취지와 도농상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특정 상품을 납품하는 농가 수 제한이 없어 일부 품목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많은 농가들의 수익이 줄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작농들의 비율이 줄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노 의원은 기획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마련을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노 의원은 시와 농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농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체계 및 현황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농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컬푸드와 농가가 상품 손실 처리에 대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싱싱장터 안정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당일 판매되지 못한 신선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처 마련과 새벽장과 같은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렵게 수확한 소작농민들의 싱싱한 농산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2차 판매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종용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로컬푸드가 앞으로 혁신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푸드플랜은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북미 지역의 대도시에서 도입한 지역 먹거리 종합 관리 시스템이다. 런던, 암스테르담, 뉴욕, 토론토는 물론,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전주시 등이 자체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5분
자유발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언

이재현 의원

“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및
시정 3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마을 스마트주치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3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보건소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 보건인력 확보와 보건지소 전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 출범 이후 인구가 32만명(184%)으로 급격히 증가해 보건소의 업무는 기존 기초사무 외에도 15개 광역사무가 신설, 22개 사무가 확대·개편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인력은 출범 당시에 비해 3명이 증가한 6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시 보건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659명으로 아산시의 1.6배, 공주시의 약 4배가 많다. 보건인력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건인력 1인당 관리 인구수를 3천명 선으로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면 지역은 노인인구 분포가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으로 예방접종 등 단순 민원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및 시정 3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마을 스마트주치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미취업 청년 응원을 위한 포용적 청년정책 촉구

이영세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가 제정되고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실질적 역할이 부족하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3월 22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설자리를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영세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하 취업준비생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세종시도 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수당과 청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실질적 역할이 부족하다”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적 점검과 이행 평가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프랑스 청년서비스센터인 ‘미씨옹 로칼’과 ‘서울청년 활동지원센터’의 사례를 들며, “청년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심리·주거·교육 등 종합적인 설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8년 11월 제53회 정례회에서 ‘청년의 오늘을 해결 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라는 주제로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연동·부강면 연결도로 및 교량 신설” 촉구

채평석 의원

“
2018년에 10만명이 이용한
합강 오토 캠핑장도 동일 우회
도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은 3월 22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동면과 부강면 사이의 백천에 교량 및 연결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은 “연동면 명학2리, 명학4리, 합강리 주민들은 부강면 생활권이나, 연동면과 부강면 사이 백천에 교량이 없어 우회도로(청연로)로 통행을 하고 있다”며 “또한 2018년에 10만명이 이용한 합강 오토 캠핑장도 동일 우회도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백천에 연동면과 부강면을 이어주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연동면 청정아파트에서 백천 사이에 현재 농로가 있으나 도로 확장이 필요하며, 부강에서 백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시정질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방안 요구

안찬영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3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안찬영 부의장은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환경에 따라 곧바로 취업하고 원활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의장은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관내 고졸자의 취업지원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세종시 산하 공기업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의장은 관계기관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류정섭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세종시 산하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시험으로 NCS(국가 직무능력표준)와 인적성 시험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이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 부의장은 "스펙을 쌓는 데 필요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안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다.



시정질문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해야**

임채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3월 5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등 학업중단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퇴학의 경우 재입학이 불가한 강력한 처분임에도 교사로만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퇴학 처분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선도위원 구성을 통한 객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와 같은 세종형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난달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운동에 소질과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엘리트 체육을 유치해나가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스포츠클럽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교육감에게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세종시 대표선수 선발, 지도자 구성 등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질문

아름2중 신설을 위한
시·교육청 적극 협력 강조

상병현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가칭)아름2중학교 신설을 위해 세종교육청과 세종시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인 상병현 의원은 3월 5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최교진 교육감에게 아름2중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통과와 함께 아름동 중학교 부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춘희 시장에게는 아름2중 신설의 교육부 중투심사 통과와,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아름2중 신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학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으로, 교육감님은 2018년 선거공약으로 아름2중 신설을 내세웠고 아름동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분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름2중의 신설로 아름동 학생들뿐 아니라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운동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름2중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차별화되고 효과



적인 심사위원 설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상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 비현실적인 완성 학급수와 부족한 심사 자료로 아름2중학교 중앙투자 심사 통과가 3번이나 무산된 점 ▲ 몇 년 전부터 제기된 아름중의 과밀학급과 교실부족 문제를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한 점 등에 대해 비판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 아름2중학교 신설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서화된 학교시설 복합화 협약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아시안게임 치를
국제규격 경기장 구축”
강조

윤형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행복청, LNH,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3월 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55차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다. 이날 답변석에 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윤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시의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시·도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가운데, 윤 의원은 세종시에도 국제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을 구축해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행사에 대비하자며 5자 협의체 구성을 공론화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은 먼저 “세종시에 있는 인조잔디 야구장 6개, 축구장 7개 전부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이라서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의 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 지역의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예산이 적게 드는 생활체육시설만 고집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모든 체육시설이 국제규격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스포츠용품 판매시설, 컨벤션 시설을 부대시설로 한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대상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포함시키면 건립비가 다소 들더라도 신축이 가능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신축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른다면 아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인 세종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공공시설물, 철저한 인수
점검·관리 필요하다

박 성 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3월 6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관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성수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2030년까지 모두 110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해도 약 1,25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비용추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건설지역 하수처리 시설인 수질복원센터 A와 공공하수관로의 처리용량과 규모 등이 인구유입이나 각종 시설 입주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연이어 발생한 오수 맨홀 Over-Flow 문제에 대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은 물론, 미정화된 오수의 하천 유입과 싱크홀 발생까지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엇박자 난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이태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은 3월 6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이태환 의원은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강제 규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을 제시하며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원회 현황에 대한 검토 중 세종시 행정 처리 능력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관리부서 제출 자료와 실무부서 운영 자료의 불일치를 예로 들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시정(市政)을 요구한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원회 구성과 폐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실한 조례 이행을 통한 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과 함께 위원회 현황 및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소규모 수도시설서
검출된 라돈의
철저한 관리 촉구



차성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3월 6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지난 1월 시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관리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차 위원장은 집행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한 끝에 세종시민들이 마시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환경부 기준치(148Bq/L)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주민 홍보 부족과 라돈 저감장치 설치 이후의 관리 부실 문제 등도 지적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시가 앞으로 전체 지하수에 대한 라돈 함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등 급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라돈 저감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현안질문

**“고입배정 오류 사태는
세종시교육청의 안일함이
낳은 참사” 비판**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월 16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상대로 고입배정 오류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당황스러웠다”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며 질타하고, “이번 사태로 세종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배정오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 후 발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오류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며 추궁했다.

또 “충분한 검토 없이 6시간 만에 수정배정을 발표하여 혼란을 야기했고, 12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후순위 배정학생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이어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배정 오류의 문제가 향후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배정 오류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로 동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원이 증원된 학교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고교 서열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그 심각성을 교육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손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대입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사태로 무너진 교육청의 행정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깊은 고민과 반성”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인)» 긴급현안질문

금강의 생태계 파괴는
세종보 건설 때문이 아닌,
지방하천 오염물
유입이 원인



박용희 의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3월 22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준희 시장을 상대로 세종보 해체 방안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세종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세종보는 도시계획 상 금강 친수구역 조성을 목표로 건설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세종보의 핵심 건설 목적 중 하나인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9일 ‘세종보 처리방안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세종보 해체에 따른 금강 수위 저하로 아파트 조망권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 8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세종시 수질관리 현황분석 및 정책수립 연구〉 자료를 근거로 금강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세종보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세종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보는 200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로, 풍부한 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이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세종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만큼, 설부른 해체보다는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운영을 해보다가 더 이상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세종시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있은 후에 해체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문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철저한 규정 엄수 필요



유 철 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3월 22일 제55회 세종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싱싱문화관 관리 및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유철규 의원은 먼저 “집행부가 제55회 임시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로컬푸드 운영 지원사업비 1억 원의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는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답변하면서도 예산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싱싱문화관 관리비 산출 근거와 시행 주체 변경에 따른 감액신청 사업설명서 내용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싱싱문화관 운영·관리 주체를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바꾸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사업설명서에 미첨부한 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유 싱싱밥상 건립·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해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 14일에 행정안전부가 최종 결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이 급조되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미비된 것 아닌가”라고 일갈 하며,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 규정을 벗어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기간 중 1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했다.

폐회 중 2월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원과 질문순서 협의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기간 중 3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



유철규
위원



윤형권
위원



이영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총무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기간 중 1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보건소, 대변인, 감사위원회,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기간 중 1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대통령 세종집무실 촉구 결의안, 동의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기간 중 3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기간 중 3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박성수
위원



안찬영
위원



이영세
위원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기간 중 1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기간 중 1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을 포함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세종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기간 중 3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기간 중 3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했다.



차성호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



손인수
위원



이재현
위원



이태화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기간 중 1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폐회 중 1월 30일 상병현 위원장과 손현옥·임채성 위원은 세종시 아름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세종 민원콜센터를 방문했다.

폐회 중 1월 31일 상병현 위원장은 세종시 보람동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기간 중 1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제54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12일 상병현 위원장은 한솔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솔동 여성의용 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8일 상병현 위원장과 손현옥 위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신학기를 맞은 두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어린이 보행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기간 중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세종 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변경안 2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했다.

기간 중 3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상병현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국·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기간 중 3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 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54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민간전문가 구성 및 현장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시민참여단 선정의 건, 점검 대상지 점검방법 등 선정의 건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55회 임시회

제55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7건과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등 총 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도박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권고,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수행 기관 등의 재정지원 및 위탁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 세대에 납부 유예 기간 조항 신설(2022년 6월 30일 까지 보험료 전액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상향 조정, 위원 수 확대, 시의원 포함, 양성 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의 정책 목표와 의무규정 제시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성별영향 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신설,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자문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 정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수정가결)

그 외 조례안 및 동의안

시장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교육감 제출

-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회기 19일



처리 안건 42건



의안 종류 별

조례안

17

의원 제출

9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

의회운영위원회

3

행정복지위원회

11

산업건설위원회

11

교육안전위원회

2

행정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1

7

1

1

3

결의안

동의안

규칙안

의견청취

예산안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54회 임시회

제54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출자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 규정, 세종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세종학진흥계획의 내용 및 지원, 세종학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출자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예방접종 지원 대상·접종종류·횟수 및 비용 지원 규정, 예방접종 지원 절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출자 임재성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학업과 운동 병행을 위한 학생선수의 교육 지원 등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출자 안찬영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작은 목욕탕의 적용 범위 확대(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추가)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출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피해보상 지원 기준 완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쉽게 조문 정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출자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출산장려물품' 용어 정의 신설, (대상)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 출산장려물품 지원 근거 신설

그 외 조례안 및 동의안

시장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교육감 제출

-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 현안 의견 청취의 건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회기 10일



처리 안건 33건



의안 종류 별

조례안

20

의원 제출

조례안

13



소관 상임위원회 별



의회운영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13

산업건설위원회

6

교육안전위원회

6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정부와 국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돼 33만 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세종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입법 정보

56 생활법령–솔로몬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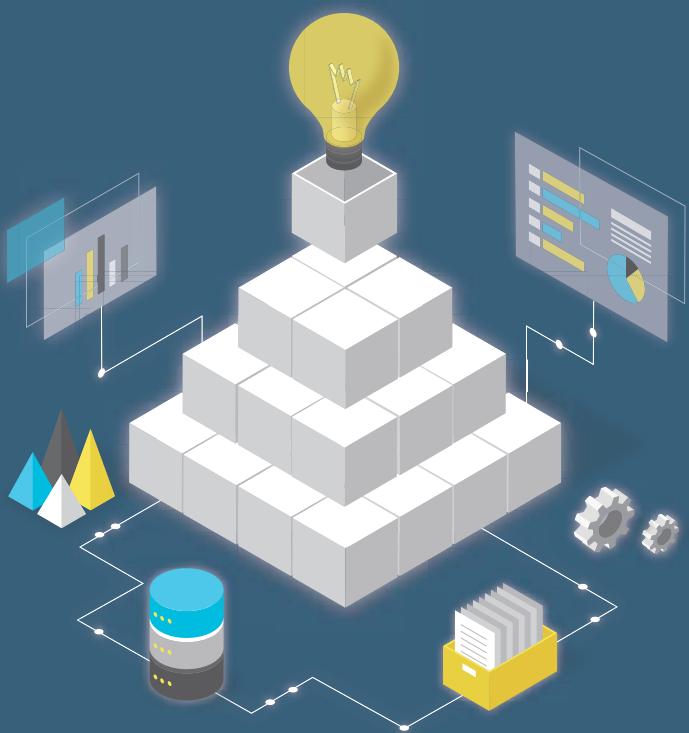
61 주요 입법동향

최근 공포 법령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최근 입법 예고 주요 법령

68 법령 해석사례

73 최근 시행법령

75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 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 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 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 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 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 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① **아롱이** : 김대포 씨는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나쁜 씨의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되고, 그 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도 되지.

② **다롱이** : 김대포 씨는 통장을 양도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나 사기방조죄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나 이나쁜씨 와 김대포 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김대포씨는 무죄야.

③ **초롱이** : 김대포 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평 결

정답은 "3번.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김대포 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12개월 후 지현은 친구 한나가 최근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일을 하였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① **한나** : 지현아,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12개월 이상 실제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안됐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울 거 같아.

② **지현**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어도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고, 방학이후에 다시 계약했으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싶어.

평 결

정답은 “2번. 지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어도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고, 방학이후에 다시 계약했으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싶어”입니다.

본 건 사안은, 방과 후 교사의 방학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인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 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위 판결에서는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처분일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 두44165 판결).

따라서 방학기간의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은 업무특성상 일시적인 것으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므로 지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버스운전기사인 나기사 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나기사 씨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고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고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나기사 씨, 회사 측에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나기사** : 대기시간에 보통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버스 청소나 차량점검도 합니다. 그러나 대기시간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고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② **빵빵운수 주식회사** : 대기시간 중 차량점검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

평 결

정답은 “2번. 빵빵운수 주식회사: 대기시간 중 차량점검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또한, 이 사례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나기사의 대기시간 중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한 1시간 외에 자유롭게 활용한 추가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초과수당은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유명한 사진작가인 유메라 씨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할 계획에 모델인 나이빠 씨와 촬영 계약을 하였습니다. 촬영 중 유메라 씨는 사용은 하지 않겠다며 나이빠 씨에게 일부 노출 촬영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유메라 씨는 촬영을 진행하면서 상냥하고 아름다운 나이빠 씨에 반하게 되고 촬영 마지막 날 나이빠 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이빠 씨는 얼마 뒤 결혼을 한다며 유메라 씨의 고백을 거절하였는데요 대답을 들은 유메라 씨는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동심에 유메라 씨는 소장하고 있던 나이빠 씨의 사진 중 신체 부위가 나온 부분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후 나이빠 씨의 남자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빠 씨의 촬영을 몰랐던 남자친구와 나이빠 씨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이빠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 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2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박관대** : 유메라 씨와 나이빠 씨가 계약을 하고 촬영한 거잖아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니까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② **손중재** : 계약을 하고 촬영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나이빠 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빠 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물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③ **김엄격** : 결혼을 앞둔 나이빠 씨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유메라 씨가 충동심에 나이빠 씨의 신체가 나온 촬영물 일부를 나이빠 씨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찍어 유포 한 행동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 결

정답은 “2번. 손중재 : 계약을 하고 촬영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나이빠 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빠 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물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제2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판결 등 참조).

이 사례의 경우에도 나이빠 씨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후에 나이빠 씨에 동의 없이 사진의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포하였지만 이는 나이빠 씨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유메라 씨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다팔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대표 씨, 나대표 씨는 인터넷을 통해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의 의약외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 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제조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과연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새로 포장해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처럼 판매한 행위는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① **나대표** : 단순히 의약외품을 개봉한 후 재포장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의약품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제품의 사용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가 아니지요!

② **소비자** : 개봉 후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표시하여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요!

평 결

정답은 “2번. 소비자 : 개봉 후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표시하여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요!”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7호).

「약사법」 제31조제4항은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악리 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약외품의 명칭·제조업자·제조연월일·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팔아 주식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며, 제품 포장을 뜯어 재포장하는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이 변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최근 공포 법령

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3. 5공포 /'19. 3. 5 시행/대통령령 제29602호

개인파산의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바,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한도를 900만원에서 1천110만원으로 증액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02

동물보호법 시행령

▶ '19. 3.12공포 /'19. 3.21 시행/대통령령 제29614호

맹견의 소유자 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19. 3. 21.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으로 정하는 한편,

개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정상의 불일치로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로 거래가능기간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03**지방자치법 시행령**

▶ '19. 3.12 공포 /'19. 3.12 시행/대통령령 제29609호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이념 및 사무배분의 원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에 각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0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19. 3.19 공포 /'19. 3.19 시행/대통령령 제29628호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상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상담, 인성교육 등으로 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0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3.26 공포 /'19. 3.26 시행/법률16303호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1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상민 의원 등 10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탈중앙화·분산화시킬 수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2**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김동철 의원 등 10인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고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사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노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과 집단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일례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92%의 청소년들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노동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20%대에 불과해 노동 관련 교육이 절실함.

또한, 경제·법·통일·환경·산림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행되고 있는 반면, 노동교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도 노동 교육은 더욱 장려될 필요성이 상당함.

이에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 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 의원 등 10인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함.

특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권 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업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은 1984. 4.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로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 6. 30.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중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를 보면, 전체(161건) 사기건수 대비 82건(50.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유사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한 중개보조원을 수백명씩 고용함으로 인해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우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고,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상응하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3.25.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 23.까지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 1.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 2.까지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5**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 8.까지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6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18까지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7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17까지

악취방지법이 개정('18. 6. 12., 시행 '19. 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

0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22까지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하되,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제3조의3에 신설하면서,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함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45세 이상인 경우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더라도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수준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자 함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 및 지급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최근 입법 예고

0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19. 4.29까지

지방공기업 임원 정실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1

법령
해석사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18-0524 / 회신일자 2019. 1. 16.

회답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주석: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은]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02

법령 해석사례

질의요지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제처-18-0607 / 회신일자 2019. 1. 16.

회답

이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작은도서관법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작은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제2조제3호)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주석: 의안번호 제17464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여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4항제1호)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03

법령
해석사례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제처-18-0554 / 회신일자 2019. 3. 26.

회답

이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를 [주석: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참조] 각각 구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6항).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운영 목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주석: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주석: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참조]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 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04

법령 해석사례

질의요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 법제처-18-0703 / 회신일자 2019. 3. 26.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
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되는지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회답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사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주석: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
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
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05

법령
해석사례

질의요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관련)

▶ 법제처-18-0712 / 회신일자 2019. 3.26.

회답

이유

소방시설공사업[주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주석: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추가로 적발된 경우, 처분권자는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차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주석: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493 해석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시행 법령

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3월 25일 시행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②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4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월 1일 시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④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4월 1일 시행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하려는 것입니다.

❸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월 16일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약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벌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월 16일 시행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7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休止)·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❺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월 19일 시행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재개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시행 2019. 1. 3.

제안이유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2019-1-3 조례 제 69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 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와 자치구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

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시행 2019. 1. 4

제안이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 마. 행복영향평가, 예산 운영, 행복 증진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2019- 1- 3 조례 제 69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 격차”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사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960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시행 2019. 2. 6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의 노동권 보장과 함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책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리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노동실태조사, 시민 의견수렴,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마.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바.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등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시장은 시 및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아.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노동권익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3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19-02-06 조례 제 58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목표
 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제7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법령의 교육 등)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노동 관련 법령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누구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10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역 내 노동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3. 노동자 권리 구제 활동 지원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노동권익보호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16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노동권익보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노동권익보호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노동권익보호관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노무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 법인·단체의 노동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③ 조사관은 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1.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권익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심의·자문
2.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
3.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포상)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의 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19. 3. 13.

제안이유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 신청 등 (안 제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안 제5조)
- 위탁 (안 제6조)
-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안 제7조)
- 대장 비치 등 (안 제8조)
- 보고 (안 제9조)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 3-13 조례 제 16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 해충 구제에 취약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 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

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3. 13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2018.12.28.

제안이유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장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정) 2018-12-28 조례 제 52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간접흡연”이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입주자등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17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시행 2019. 3. 28.

제안이유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경상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범위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경상남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일부개정) 2019-3-28 조례 제 45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는 관광활동 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 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 을 말한다.
3.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의 조성과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제약 없이 관 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4.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 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 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접근 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
5.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정 시설과 설비를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보급
3.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및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양성
4.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5.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6.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
7.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접근 가능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좋은 아빠 되세요



얼마 전 이웃 두 가족과 함께 김밥을 싸 들고 호수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우리는 널찍한 공원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으며 주말 휴식을 즐겼다.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쉬던 중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엄마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었는지, 또 바라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이것도 아이들과 일종의 '소통'이라 할수 있겠다 싶어 종이 한 장 씩과 볼펜을 나누고 각자 고맙게 여기는 것에 대해 적어 보라고 한 뒤 모두 수거해 하나 하나 읽어 봤다.

“호수공원에 놀러 와서 감사합니다.” “어제 과자를 많이 사 주셔서 실컷 먹었습니다.” “저녁때 놀이터에 엄마가 함께 있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의 이야기를 읽고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튼튼한 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엄마가 있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 이 아이 아빠는 직장이 멀리 대구에 있어서 주말마다 아빠가 대구에서 세종으로 올라오면서 맞벌이

주말부부를 하다 보니 아이가 엄마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엄마라도 없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걸 보고 피식 웃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버팀목 같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글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것 모두가 참 단순하고 평범했다. 즉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은 결국 아주 소박한 것, 늘 함께 있는 가족들로부터 얻는 것들이었다.

세상이 변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에게는 가족 만큼 더 소중하고 큰 가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처 없이 모두 소중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령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내 핏줄이 아닌 경우가 된 아이라 할지라도… 세종시민 모든 가정과, 모든 아이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세종시 아빠들, 친구처럼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빠 되세요!”

세종시티투어

녹색으로 물든 새봄 ‘설렘주의보’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다. 세종시의 봄빛 풍경은 경쾌한 봄의 월츠처럼 마음을 들뜨게 한다. 봄옷으로 갈아입은 자연을 따라 여행길에 올라보자. 자연이 선사한 봄의 향연은 상춘객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으로 그득하다.



‘연잎 위를 거닐다’ 조천연꽃공원

조천연꽃공원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이다. 이곳에서는 5,000m²에 달하는 담수 면적에 식재된 7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40,000m² 규모의 연꽃공원에는 소나무와 이팝나무 등 17종의 조경수는 물론,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5월부터 영산홍과 이팝나무, 6월부터 연꽃이 개화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산책로 주변에는 관찰 데크가 마련돼 있어 자연 체험 교육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공원 곳곳에 보행등과 경관 조명이 있어 야간에도 산책과 연꽃 구경 등이 가능하다.

위치 | 조치원읍 번암리 226 문의 | 044-300-5335



‘솔향에 취하다’ 오봉산

오봉산은 조치원읍과 연서면, 전동면에 걸쳐 있는 262m의 동산이다. 대부분의 산길이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에 오를 때 은은한 솔향이 코 주위를 맴돈다. 등산 코스가 험난하지 않아 가족 단위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또 숲길마다 삼림욕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맨발등산로와 휴식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산길 초입에는 조치원읍 봉산리 최씨문중 사당인 송모단이 위치해 있다.

위치 | 조치원읍 오봉로 107



‘전통 장에 반하다’ 뒤옹박고을

세종시 운주산 자락에 위치한 뒤옹박 고을은 전통 장류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 이른 바 ‘장류테마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장으로 가득한 천여 개의 장독들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전통장류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박물관 관람도 가능하다.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박물관에서는 장 담그는 과정과 장의 재료, 고서 등을 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위치 | 전동면 배일길 90-43 문의 | 044-868-7007

관람시간 | 9am~7pm 휴일 | 설날 및 추석



‘세종의 눈을 고친 약수’ 전의초수

전의초수는 ‘왕의 물’로 불리는 약수다. 세종대왕은 눈병의 일증인 안질로 오랜 기간 고생했다. 당시 전의초수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자 세종대왕은 이 물로 1년여간 눈병을 치료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의 눈병이 씻은 듯 사라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의초수를 ‘왕의 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물맛이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을 내 초수(椒水)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치 | 전의면 관정리 147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NEWS PAPER

충청신문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촉구

2019년 01월 18일 (금)
종합 01A면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일부 공항 독점… 중부권 주민 항공 편의 늘려야”



충청권 시·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면허 발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충북도의회에서 마련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에 있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에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제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자현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 건의문에 대한 서명했다.

의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일부 광활 면적을 집중 육성해 독점하고도 묵外交하면서 금증하는 충청권 항공 수요와 교통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 550만 주민과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가까운 청주공항을 두고 멀리 있는 타 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달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면허 발급을 촉구한다고 항목소리를 냈다.

면허 달성을 위해 여객과 화물 수송 확대를 비롯해 청주공항 활성화, 충부

권 주민의 항공 이용 편의를 기대할 수

있다. 17일 서울 건국대학교 강당에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왼쪽)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가운데) 그리고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작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채택됐다.

의장단은 이날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에어로K와 기다인즈항공은 지난 11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국제항공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민희 기자 habsch@daily.co.kr

▲ 2019. 01. 18(금) 종합 01A면 · 충청신문

大田日報

2019년 01월 28일 (월)
종합 02면

오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동건의

충청권 시·도의회 합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충청권 시·도의회가 힘을 합친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8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제택할 방침이다.

세종에는 42개 소속기관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하면 18개 부처 중 13개 부처가 세종청사에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들은 세종시 한 읍식점에서 시·도당 연석회의를 갖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청사 설치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곽상훈 기자

▲ 2019. 01. 28(월) 종합 2면 · 대전일보

동양일보

2019년 02월 25일 (월)
종합 05면

세종시의회 농·축산 선진화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22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연구모임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도 추진할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 등 활동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재현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채평석 의원,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세종시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가는 현실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농·축산업 발전의



세종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22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자와 소비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 2019. 02. 25(월) 종합 05면 · 동양일보

대전투데이

2019년 02월 25일 (월)
정치 02면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 첫발 내딛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견찬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 지원단체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22일 10시 30분 의정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과 세종시 교육청 김동호 장학관을 비롯해 교육분야 민간 전문가 강경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주현(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구(고운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 2019. 02. 25(월) 정치 02면 · 대전투데이

충청신문

2019년 03월 18일 (월)
인물 21면

서금택 세종시의장, 노인대학 특강

'세종시 출범의 역사' 주제로 강의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지난 15일 사단법인노인의 세종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개강식에서 '세종시 출범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서 의장은 노인대학에서 평생교육을 몸소 실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일정에 백수를 보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치원의 역사와 함께 세종시의 출범 과정과 성장을 기록해온 시의 발전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시의회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강원연안 자진 폐쇄와 교동아파트 재건축, 조치원 도자기생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진 배경과 과정,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서 의장은 '여사적 기록을 보면 조치원 시장은 2020년 개설 25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금부터 250주년 행사 계획을 잘 세워 조치원과 거 사전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um.net

▲ 2019. 03. 18(월) 인물 21면 · 대전투데이

대전투데이

2019년 02월 27일 (수)
정치 02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올해 활동 방향 공유하는 등 언론계에 적극적인 협력 요청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는 26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등 언론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윤형권 위원장을 비롯해 채평석·박용희·손현옥·손인수 위원과 행정수도완성특위 세종시 출입기자단 12명 등이 참석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원로 및 활동

기들을 지문위 원으로 모셔서 우

군을 만들고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의 법률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방송 강진원 기사는 "의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위 활동에 기대를 걸다"며 "언론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큰 틀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평석 위원은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언론의 도움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각종 매체와 연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립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 2019. 02. 27(수) 정치 02면 · 대전투데이

大田日報

2019년 03월 25일 (월)
정치 04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2일 청년회 입회 세종시 본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해야

시의회 결의안 전원 채택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겠다"며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하도록 국회의 분분과 행정부와 비효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대비되는"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서 제3회 추경연금 예산을 본 예산보다 727억 원 증액한 1조 6243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 총 3226억 원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지난 대법원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날독하고 "세종 제3차례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37일 간 제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 2019. 03. 25(월) 정치 04면 · 대전일보



예쁘고 착한 세종의 딸들



일요일 오후, 외지에 갔다가 세종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은 젊은 여대생과 함께 앉게 됐다.

여대생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에 “사진 작가인가 봐요” 라며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학생은 아니라며 “혹시 연로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계셔요?”라고 뜯금없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묻는다.

그러면서 학생은 “사실은 요즘 농촌에는 사진관이 많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도시로 빠져 나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 증명사진 찍어 드리러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해외여행 보내드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권용 사진이 없어서 몇십리길 다녀오시는 걸 많이 봤어요. 사진 한 장 때문에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당한 일에 자녀분들이 영정 사진을 구하지 못해 찔찔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마을 노인분들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 드리려고 돌아다녀요.”

“아 그러면 학생의 집은 세종인데 사진 찍기 봉사활동을 하려 이렇게 전국 시골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네. 칼라 사진 잘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영정 사진으로도 쓰이게 되고요.”

아…그랬구나. 이 여대생은 자신의 시간과 경비를 쪼개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정말 그 여대생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 내게 부모님 연세를 물어본 이유도 그런 관심에서 물어본 거라 그랬다.

기부는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마음에 얻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작은 나눔에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항상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재미있고 보람돼요.”

여대생의 밝은 미소가 참 맑아 보였다. ‘세종의 모든 딸들이 이렇게만 자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새록 새록 들었다.

		시	민	여	러	분	의
		옥	고	玉	槁	를	
		기	다	립	니	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봉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정 소식지가 배포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신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박천국)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havnpark@korea.kr

| 통권 제21호 |
표지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홍보기획담당)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 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